

대학일자리센터 운영규정

제정 2019.07.15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직무,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는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.

1. 대학 내 취업, 창업, 진로지원 인프라 구축
2. 통합 진로지원시스템 개발 및 운영
3. 취업, 창업 및 진로 상담
4. 취업, 창업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5. 정부 청년고용사업 연계 및 정책 확산
6. 지역 유관기관 및 대학 간 맞춤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
7. 그 밖의 취업, 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

제2장 조직

제3조(센터장) ①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센터장을 두며, 임기는 1년으로 총장이 위촉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센터장은 센터의 대표로서 행정을 총괄한다.

제4조(조직)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 및 상담원을 둘 수 있다.

②상담원은 관련분야 실무 유경험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.

제5조(청년고용협의회) ①정부고용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의 취업, 창업지원 관련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년고용협의회(이하 ‘협의회’라 한다)를 둔다.

②협의회는 센터에서 수행한 모든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.

③협의회는 취업창업지도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 한다.

제3장 평가

제6조(평가) 센터의 평가는 취업창업교육지원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.

제4장 재정

- 제7조(재정 및 회계)** ①센터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정은 국고지원금과 대학대응금 및 지자체지원금으로 한다.
- ②회계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재무회계규정과 대학일자리센터 시행지침에 따른다.

제5장 기타

- 제8조(기타)** ①센터는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- ③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

- ① 이 규정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등에 관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